

영등포구의회
2004년 제2차 정례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제정(안)

« 檢 討 報 告 書 »

2004. 12. 9

行政委員會
(專門委員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제정(안)

《 檢 討 報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 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및운영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

-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술단원의 선발 및 소요 경비의 지원 등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안 제2조에서 합창단, 실버합창단, 청소년교향악단, 민속예술단 등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함.
- 안 제4조에서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치되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6조에서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 수립, 단원의 위·해촉 사항 및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·의결도록 함

□ 검 토 의 견

○ 조례제정의 타당성

우리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·발전시켜야 하나 우리구는 아직까지 우리구를 대표할 만한 예술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.

타구의 경우를 보면 종로구를 비롯한 22개구가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광진구는 청소년교향악단, 강서구는 국단·금관5중주단, 강남구는 교향악단, 송파구는 실버악단·어머니교향악단·실버합창단·청소년발레단·민속예술단·청소년교향악단·꿈나무리듬체조단, 강동구는 교향악단·청소년교향악단·국단·민속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를 볼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구의 위상제고와 문화창달을 위하여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
○ 관계법령 검토

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“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동법 제2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“지방문화·예술단체육성에 관한 사무”를 명시하고 있으며, 동법 제15조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

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고 있고,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은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이 조례제정안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.

○ 예술단체의 종류에 대한 검토

안 제2조에서는 "예술단체에는 합창단, 실버합창단, 청소년 교향악단, 민속예술단 등을 둘 수 있다"라고 정하여 다양한 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 다양하고 신축적인 예술단체의 설치·운영은 구민에 대한 문화서비스 충족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과 지원인력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술단체의 육성을 저해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. 타구의 사례를 보면 합창단만 설치·운영하는 구가 11개구, 어머니(여성)합창단만 설치·운영하는 구가 5개구, 합창단외 예술단체를 설치·운영하는 구가 5개구입니다. 따라서 대부분의 구가 1~2개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를 상징하는 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"합창단, 실버합창단, 청소년 교향악단, 민속예술단을 둘 수 있다"라고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단원의 위촉에 대한 검토

안 제4조 제2항에서는 “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,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형의 방법에 의한다”라고 정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 기본적인 사항은 모법에 정하고 있으며, 시행상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예인 점을 감안하면, 단원의 전형방법과 관련하여 “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라고 별도 조문을 둘 수도 있겠으나, 본 조례안 제8조와 같이 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라고 포괄적으로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같이 별도 조문을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경비의 지원에 대한 검토

안 제7조 제2항에서는 “예술단의 지휘자, 반주자 및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라고 정하였습니다.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영등포구립여성합창단운영경비로 지휘자 및 반주자의 인건비 14,400천원, 단복비 50명분 25,000천원, 3회의 대회참가비 6,000천원, 운영비 및 기타 17,000천원 등 총 62,400천원이

편성되어 있습니다.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운영비는 월 1백만원으로 1인당 월2만원의 극히 적은 실비가 지급된다고 보겠습니다.

○ 시행규칙의 내용

안 제8조에서는 “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라고 정하였습니다.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단체의 종류 및 정원
- 단장 등의 직무
- 단원의 자격, 임기(또는 정년)
- 전형방법 및 선발
- 운영위원회 구성
- 수당 등의 지급기준

-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,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제정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4. 12. 9

보고자 : 김찬재

자치구 예술단체 현황

연 번	자치구명	총 면적			면적	면적(면)	면적(면)	면적(면)
		면적	면적	면적				
1	종로구	○			일반인	50	20~55	33,800
2	중구	○			부구청장	62	20~50	57,000
3	용산구	○			부구청장	62	20~55	50,800
4	성동구	○	○(3)		행정국장	60	20~45	35,000
5	광진구			○	행정국장	80	20~50	36,000
6	동대문구			○	행정국장	60	20~50	50,000
7	중랑구				행정국장	65	20~45	34,700
8	성북구	○			부구청장	65	25~48	87,000
9	강북구		“구립 단체없음”	○				
10	도봉구			○	행정국장	60	20~45	38,500
11	노원구			○	구청장	70	25~45	50,000
12	은평구	○			행정국장	64	제한없음	57,800
13	서대문구	○			부구청장	70	20~45	40,000
14	마포구	○			부구청장	60	20~50	35,000
15	양천구				부구청장	60	20~45	49,850
16	강서구				부구청장	62	제한없음	54,400
17	구로구	○			부구청장	63	20~45	50,000
18	금천구	○			부구청장	52	20~45	110,000
19	영등포구		“구립 단체없음”	○				
20	동작구		○		부구청장	80	20~45	43,000
21	관악구		“구립 단체없음”	○				
22	서초구		“구립 단체없음”	○				
23	강남구		○(2)		행정국장	58	20~40	160,000
24	송파구		○(8)		일반인	100	20~55	76,000
25	강동구		○(6)		부구청장	60	55세이하	85,000